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후단 중 "흠결이"를 "흠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인가신 청서 흠결"을 "인가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실지조사"를 "실제조사" 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후단 중 "흠결이"를 "흠이"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차대조표상"을 "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호 중 "흠결을"을 "흠을"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 태표"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연결대차대조표"를 "연결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호 중 "유동성"을 "유동성, 내부통제"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73조제2항제5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영 제24조의2제1항"을 "제24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84조제3항 중 "영 제24조의2제2항제4호에서"를 "영 제24조의3제2항제4호에 서"로 한다.

제9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협은행이 유지하여야 하는 원화예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05 이하
 - 2.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10 이하
 - 3.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10 이하(단, 2027년 12월 31일에는 100분의 105 이하로 한다)
 - 4.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05 이하(단, 2028 년 12월 31일에는 100분의 100 이하로 한다)

별표 4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평가부문 | 계 량 지 표 | 비 계 량 평 가 항 목 | 평가비중 |
|-------------------------|---|--|-----------------------------|
| 자본 적정성 ¹⁾ | · 총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단순기본자본비율 | ·리스크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자기자본 및 위험자산 산정의 적정성 | 20% (0%) |
| 자산 건전성 |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¹⁾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채권비율(계절조정 연체율 기준) ・대손충당금적립률 | · 신용리스크관리의 적정성 · 신용리스크인식 및 평가 · 여신정책의 적정성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여신관리의 적정성 ·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실태 | 30% (50%) |
| 법규 준수 | | ·법규준수 및 정책 이행실태 ·법규준수체계 및 인식수준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 | 10% (20%) |
| 위험 관리 | | •리스크 지배구조 및 관리정책 •리스크관리절차 및 통제 •리스크측정 및 평가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금융자회사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¹⁾ | 20 ⁹⁾ % (30%) |
| 수익성 ¹⁾²⁾ | · 총자산순이익률 · 총자산경비율 · 이익경비율 · 위험조정자본이익율 | ·수익의 규모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의 수준 등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수익관리의 적정성 ·경영합리화 및 미래수익창출능력 | 10% (0%) |
| 유동성 ¹⁾ | 유동성커버리지비율³⁾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⁴⁾ 외화유동성비율⁵⁾ 원화예대율⁶⁾ 중장기외화자금조달비율⁷ 순안정자금조달비율¹¹⁾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위기상황분석(Stress-Test) 운영의 적정성 | 10% (0%) |

주 : 1) 국외지점은 적용배제
2) 수출입은행은 적용배제,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은 계량지표의 적용배제
3) 수출입은행 및 국외현지법인은 적용배제
4) 수출입은행, 국외현지법인 및 직전반기 종료일 현재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 대비 외화부채 비중이 100분의 5미만인 은행은 적용배제
5) 외화자산이 은행계정 총자산 대비 5% 이하인 은행 또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적용은행 본점은 적용배제
6) 직전 분기중 분기말월 기준 원화대출금 4조원 미만인 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적용배제
7) 외화대출잔액이 미화 50백만불 미만인 은행은 적용배제
8) "차주기업의 외환리스크관리 적정성" 포함
9) 수출입은행은 30% 적용
10) ()는 국외지점에 적용되는 평가비중
11) 수출입은행은 적용배제

별표 5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평가부문 | 계 량 지 표 | 비계 량 평 가 항 목 | 평가비중 |
|------------------|--|---|------|
| 자본 적정성 |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¹⁾ 보통주자본비율¹⁾ 단순기본자본비율 | 자본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 체계의 적정성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수준의 안정성 및 보완 여력의 적정성 리스크를 감안한 자본 관리의 적정성 | 20% |
| 자산 건전성 | •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연체대출채권비율 (계절조정연체율 기준) • 대손충당금적립률 | • 여신정책 및 관련 체계·조직의 적정성 •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자산건전성 분류 등 관련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관리의 적정성 • 신용리스크 관리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 25% |
| 경영 관리의 적정성 | | ·지배구조의 적정성 ·경영전략수립 및 조직 관리의 적정성 ·성과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 | 10% |
| 수 익 성 |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경비율 이익경비율 위험조정자본이익율²⁾ | ·수익성 관리 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수익성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수익성 관련 지표 변동요인 및 수익·비용 구조의 적정성 | 5% |
| 유 동 성 | 유동성커버리지비율³⁾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⁴⁾ 외화유동성비율⁵⁾ 원화예대율⁶⁾ 중장기외화자금 조달비율⁷⁾ 순안정자금조달비율⁸⁾ | ・유동성 관리 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유동성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유동성 관련 지표 및 자금조달・운용구조의 적정성 ・유동성 관련 한도 관리 및 위기상황분석 등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15% |
| 내부통제 | | • 내부통제 조직의 적정성 • 내부통제 관련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운영의 적정성 • 금융사고 예방 기능의 적정성 • 상시감시 및 자체 검사업무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적정성 • 고객정보 보호 기능의 적정성 • 법규, 정책 및 검사지적 사항의 이행실태 | 15% |
| 리스크 관리 | | •리스크 지배구조 및 관리정책의 적정성 •리스크 측정 평가 및 관리 절차 •위기상황분석 실시의 적정성 | 10% |

- 주 : 1),8) 제102조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적용배제
 - 2),3),4),6),7),8)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은 적용배제
 - 4) 직전반기 종료일 현재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 대비 외화부채 비중이 100분의 5미만인 은행은 적용배제
 - 5) 외화자산이 은행계정 총자산 대비 5% 이하인 은행 또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적용은행 본점은 적용배제
 - 6) 직전 분기중 분기말월 기준 원화대출금 4조원 미만인 은행은 적용배제
 - 7) 외화대출잔액이 미화 50백만불 미만인 은행은 적용배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제1호 및 <별표5>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제5조(은행업의 인가) ① ~ ④ | 제5조(은행업의 인가) ① ~ ④ |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 ⑤ 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신청 | 5 | |
| 서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법 | | |
|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를 | | |
|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 | |
| 은행업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 | |
|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 | | |
| 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 | <u>উ</u> ০] | |
| 다. 이 경우 신청서에 <u>흠결이</u> | | |
|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 | |
| 있다. | | |
|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 | <u> </u> | |
|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 | | |
| 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 | |
|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 | | |
| 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 | | |
| 사·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 | |
|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
|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 | |
|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 | | |
| 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 | | |
| 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서 | | |

신설 2021. 10. 14.>

- 1. (생략)
- 2. 제5항에 따라 <u>인가신청서 흠</u><u>결</u>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그 보완기간
- 3. (생략)
- ⑦ 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이해관 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 담 등의 방법으로 <u>실지조사</u>를 하도록 하고, 인가신청인은 이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⑧ ~ 13 (생략)
- ① 금융위가 제13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제2항의 요건을 갖출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는 2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흡결이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있다.

| 1. (현행과 같음) 2 <u>인가신청서</u> |
|--|
| 3. (현행과 같음) ⑦ |
| |
| 실제 조사 |
| <u>=====================================</u> |
| 8 ~ ① (현행과 같음) ④ |
| |
| |
| <u>흑</u> 이 |
| |

- ① (생략)
- 제11조(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
 - ① ~ ③ (생 략)
 - ④ 제1항에서 정하는 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합산한 것 으로 하되 <u>대차대조표상</u> 자본총 계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 없다.
 - 1. 2. (생략)
 - ⑤ ~ ⑧ (생 략)
- 제14조의2(주식보유승인 등의 처 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영 제4조의3 단서 및 영 제10조제4 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 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 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 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 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1. 10. 14.>
- (15) ~ (17) (현행과 같음) 제11조(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재무상태표상 ---1. • 2.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 제14조의2(주식보유승인 등의 처 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

- 1. 승인신청서의 <u>흠결을</u> 보완하는 기간
- 2. ~ 4. (생략)
- 제16조의4(대주주에 대한 신용공 여 등) ① 영 제20조의7제4항제 5호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 1. 2. (생략)
 - 3. 은행 <u>대차대조표</u> 계정과목의 변경
 - 4. ~ 6. (생략)
 - ② ~ ⑤ (생 략)
 - ⑥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은행 <u>대차대조표</u> 계정과목의 변경
 - 2. (생략)
- 제32조(회계기준 및 결산) ①·② (생 략)
 - ③ 법 제41조제1항의 "금융위

| 1 출승 | |
|--|--|
| 2.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대주주에 대한 신용공 여 등)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재무상태표</u> | |
|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2. (현행과 같음) 제32조(회계기준 및 결산) ①·② (현행과 같음) | |

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라 함은 <u>연결대차대조표</u>와 연결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④·⑤ (생 략)

- 제33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제 ·② (생 략)
 - ③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 관의 경영실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 한다.
 - 1. 은행 본점, 은행 국외현지법 인에 대한 경우 : 해당 은행 또는 은행 국외현지법인 전체 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리스크 관리
 - 2. (생략)
 - ④ ~ ⑥ (생 략)
- 제43조(평가범위) ① 제42조에 의 제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월말 현재은 행대자대조표(신탁계정을 포함한다)상 자산과 부채의 각계

| ④·⑤ (현행과 같음) |
|-------------------------|
| 33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
| • ② (현행과 같음) |
| ③ |
| |
| |
| |
| |
| |
| |
| 1 |
| |
| |
| ㅇ두서 기 비 투 |
| <u>유동성, 내부통</u> |
| <u>제</u> 2. (현행과 같음) |
| 4 ~ ⑥ (현행과 같음) |
| [43조(평가범위) ① |
| |
| |
| 재무상태표 |
| <u> </u> |
| |

여

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은 평가 및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1. 2. (생략)
- ② 은행 <u>대차대조표</u> 난외계정 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항목을 평가 및 산정대상으로 한다.
- 1. ~ 3. (생 략)
- 제52조(자회사등 신용공여한도 저 등)①(생략)
 - ② 영 제21조제7항제4호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 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 한다.
 - 1. · 2. (생략)
 - 3. 은행 <u>대차대조표</u> 계정과목의 변경
 - 4. ~ 6. (생략)
 - ③ ~ ⑤ (생 략)
- 제73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저 등) ① (생 략)
 - ② 영 제20조의5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

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 다.

- 1. ~ 4. (생략)
- 5. 은행 <u>대차대조표</u> 계정과목의 변경
- 6. (생략)

제84조(보고) ① (생 략)

- ② <u>영 제24조의2제1항</u>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회사등"이라 함은 제4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③ <u>영 제24조의2제2항제4호에서</u>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할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제96조(수협은행에 대한 특례) ① ·② (생 략)
 - ③ 삭 제

<u><신 설></u>

| 1. ~ 4. (현행과 같음) 5 <u>재무상태표</u> |
|--|
| 6. (현행과 같음) 제84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u>영 제24조의3제1항</u> |
| 3 영 제24조의3제2항제4호에서 |
| |

- ④ 제2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 하고 수협은행이 유지하여야 하 는 원화예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024년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05이하

- 2.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10이하
- 3.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10
 이하(단, 2027년 12월 31일에
 는 100분의 105 이하로 한다)
 4.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05
 이하(단, 2028년 12월 31일에
 는 100분의 100 이하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
| 소관부서 | 은행과 | 은행감독국 |
| 연 락 처 | 02-2100-2982 | 02-3145-8050 |